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정 2000. 12. 29.

개정 2004. 12. 17.

개정 2009. 12. 30.

개정 2010. 4. 19.

개정 2014. 3. 18.

개정 2018. 12. 2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이라 한다.

<개정 2014. 3. 18.>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14. 3. 18.>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학술조사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교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8.>

제4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학생의 장학사업 지원
3. 도서, 연구기자재, 학교시설 및 후생복지의 확충 지원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5. 대학의 문화·체육활동 지원
6. 대학의 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소유 부동산의 공여
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할 때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이 사 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 사 5인 이상 20인 이내 (이사장, 부이사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

감 사 2인

②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 선임) ①이 법인의 임원중 이사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으로 하며,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교학처장, 총무과장과 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규정에 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해당국장, 부여군수, 대한불교조계 종 총무원 문화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개정 2018. 12. 27.>

②임원 중 부이사장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 12. 27.>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의결로 정한다.

④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 12. 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4.12.17.>

제8조(임원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의 반수 임원은 임기의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이사장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0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직무 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와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② 감사는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와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운영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와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 본인이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이사장에게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

제15조(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회의 구분) 이사회는 정기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17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9조(재산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 의결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7.>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2. 현재 기본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재산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2]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8. 12. 27.>

③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산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2조(경비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3조(회계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 발기인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5장 하부조직

제29조(운영위원회 등) ①이 법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촉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으로 한다.<개정 2014. 3. 18.>

③ 이사장은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을 위한 사무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0조(사무국 설치) ①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무국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3. 18.>

②사무국장 등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보수 등 근무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삭제 2004.12.17>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광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신문에 광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 사	김학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주공① 105-102	4년	국회의원
이 사	김종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16-11	2년	문화재위원
이 사	장주원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74-209	2년	옥 장
이 사	안봉수 (혜자스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 수락산 도안사	4년	조계종 문화부장
이 사	정희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9 한라시그마타워 1602호	2년	청강학원 상임이사
이 사	신응수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21-45	2년	대목장
이 사	박윤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9동 258-601 대성빌라 2-305	재임기간	기성회장
이 사	김병모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	재임기간	총 장
이 사	김종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69-32 현대① 1동 403호	재임기간	문화재청 문화재기획국장
감 사	유재호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651	1년	공인회계사
감 사	조성준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969 놀피① 2동 1206	2년	공인회계사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년 12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년 12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12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 12. 27.>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금 액(시가)	비 고
1. 기본재산		31,000,000원	
2. 운영재산			
합 계		31,000,000원	

[별표 2]<개정 2018. 12. 27.>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재산구분	재산의 표시	금 액(시가)	비 고
1. 기본재산		1,600,000,000원	
2. 운영재산			
합 계		1,600,000,000원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12. 27.>

위 임 장

위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한국전통문화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합니다)
------	--